

◎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-100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9월 04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 대상

번호	대상자	법인등록번호/ 주민등록번호	고지주소	법 령 위 반 사 황	과 태 료 금 액(원)	스 팜 전 화 번호	광 고 내 용
1	주식회사 씨앤ㅇㅇ리아	110111- 8279***	서울특별시 강북구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	7,500,000	1670-**-84	로또
2	최ㅇ선	661105- 1*****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	3,750,000	02-6220-****	교육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4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5. 납부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

- 고지서 발급은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과(02-6735-81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- 건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-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-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(☎ 02 - 6735 - 8130 / FAX 02-6735-8144 / E-mail : yjwon222@korea.kr)